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2026 경기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2026. 1.

경기도교육청

(특 수 교 육 과)

「2026 경기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은

「경기특수교육 비전 2033」에 담은

10년의 전망, 10가지 약속과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정책 방향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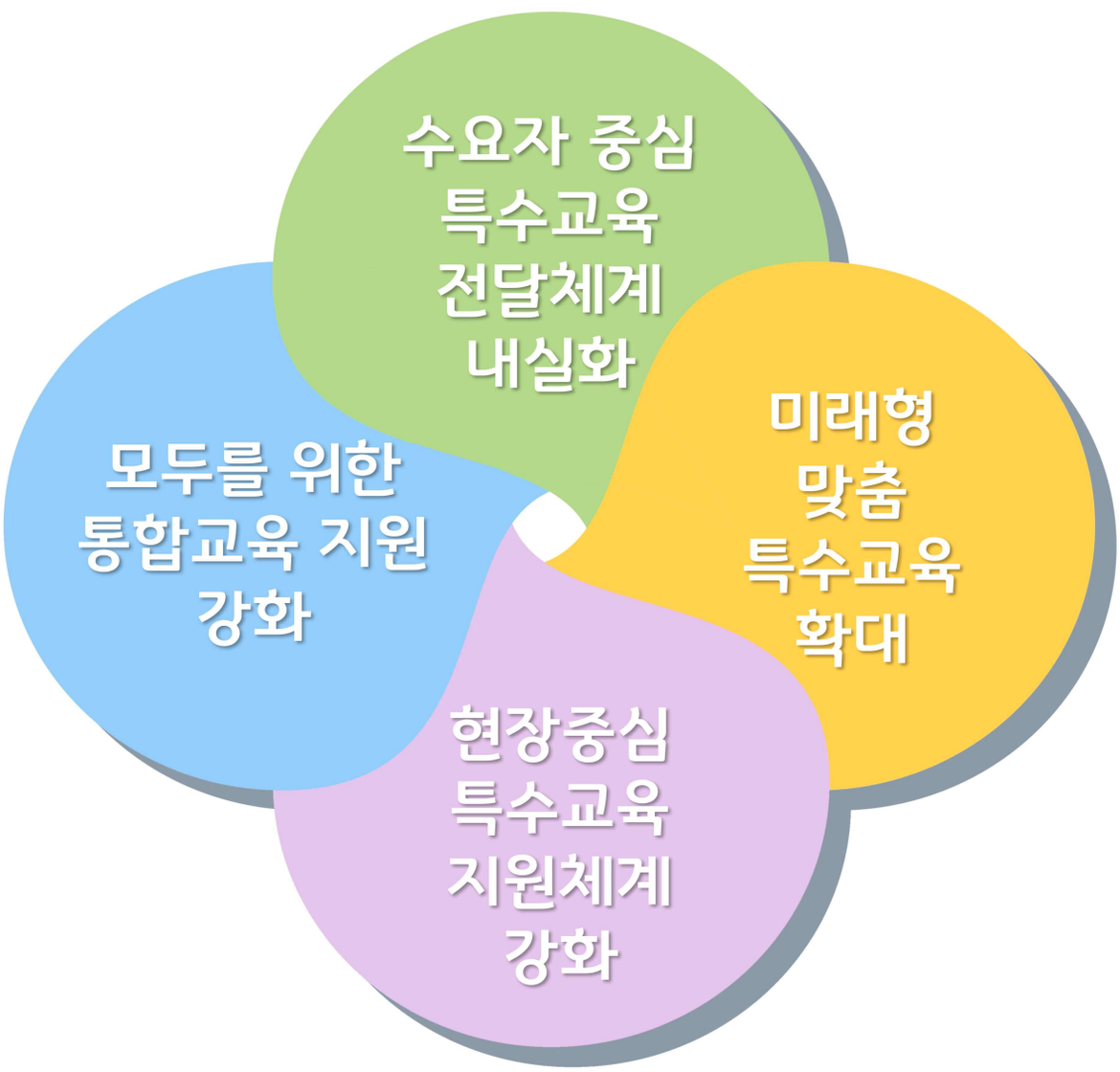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을 실현하고자

4대 추진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목차

Ⅰ. 경기특수교육 비전 및 추진 전략 ····· 1

Ⅱ. 경기특수교육 추진 과제 및 주요 과제 ····· 2

Ⅲ. 2025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3

Ⅳ. 2026 특수교육 정책추진 주요 내용 ····· 6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6

1-2.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12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 15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2-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0

2-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26

2-3.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 32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1.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39

3-2.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 42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1.「교육정책 보편적 설계」기반 통합교육 강화 ····· 52

4-2.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56

Ⅴ. 부 록 ····· 65

부록1. 2026 연간 특수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 65

부록2.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 ····· 67

부록3. 경기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68

부록4. 경기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69

부록5.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현황 ····· 69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정책 방향

- (자율) 수요자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균형) 교육약자를 고려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로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
- [미래] 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체제 구축

4대 추진 전략 · 10개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3개년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3개년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3개년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3개년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경기특수교육 추진 과제 및 주요 과제

정책영역	10개 추진과제	27개 주요과제	쪽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1-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 강화	6
		1-1-2.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8
	1-2.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2-1. 특수학교 확대 및 다양화	12
		1-2-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13
		1-2-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14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1-3-1.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15
		1-3-2.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16
		1-3-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17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2-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1-1.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20
		2-1-2.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강화	22
		2-1-3.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22
	2-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 교육 다양화	2-2-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26
		2-2-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29
		2-2-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29
	2-3.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2-3-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32
		2-3-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5
		2-3-3.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36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1.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3-1-1.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39
		3-1-2.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	40
	3-2.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3-2-1. 특수교육 인력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42
		3-2-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45
		3-2-3.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47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4-1-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정책 수립	52
		4-1-2.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53
		4-1-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55
	4-2.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4-2-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56
		4-2-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60

2025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 성과 및 시사점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25청별)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학급 운영(37학급, 107명 교육 지원)

○ 장애영유아 유·보·초 이음교육 연계 안내자료 개발·보급(´26년 1월)

1-2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1교 개교 완료, 6교 28년 개교)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27교 59학급 운영(9교 14학급 확대)

○ 교육·치료 병행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5교 9학급), 원격수업 위탁(997명)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역량 강화

○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원 건립 추진(´26년 3월 개원)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459종 신규 구입 및 1,124종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4회) 및 성과 평가(2회)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2-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50교) 및 사례집 발간(11월)

○ 특수교육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 운영(1,200명) 및 교수요원 양성(163명)

○ 특수학급 학생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효과성 확인 정책연구 완료(12월)

2-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지역사회 연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40개, 8.1% 증가)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설명회(434명), 취창업박람회(708명), 대학생활체험(174명)

○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기반 구축(15교),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 운영(4개청)

2-3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도움자료 보급(3종) 및 고시 외 과목 개발(3과목)

○ 특수학교 생활기록부 점검(39교), 영아학급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 개발(1종)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모델 개발 및 성과공유회(12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1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특수학교 차원의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7교)

○ 병원연계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1개소), 교육공동체 행동지원 강화 연수(4회)

○ 장애학생 행동지원 플랫폼(경기Be-Able) 개통(9월), 튜토리얼 영상 제작(´26년 1월)

3-2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 특수교육지도사(1,419명), 특수교육협력강사(535명), 사회복무요원(1,643명) 지원

○ 특수교육교내방과후교실(5,146명), 자유수강권(20,734명), 종일반(1,123명) 지원

○ 특수학교 방학중 지역사회 돌봄(32교, 89학급), 초1~2 늘봄(28교, 54학급)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1「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모니터링단 운영(4월)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11월)

○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정다운학교’운영(48교), 통합교육지원실 구축(10교)

4-2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운영(427교) 및 장애공감 공모전 개최(10월)

○ 보건복지부 사회적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 표창 수상(11월)

시사점

-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학생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와 정당한 교육 편의 제공으로 실질적 참여 보장 필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책무성 공유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보급 필요**
- **심각한 행동 문제(자해, 공격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시적 지원 필요**
- **졸업 후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 교육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일상적 정착 필요**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추진목적

장애영유아 조기발견·맞춤형 지원에 대한 연속적·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21조(통합교육)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1-1-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 강화로 장애(위험) 조기 발견**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사업 및 지역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참고 영유아 선별검사 제공

- 가칭영유아발달지원 플랫폼(www.k-sied.org, 육아정책연구소)
- 우리아이발달지원단(m.woorii114.org,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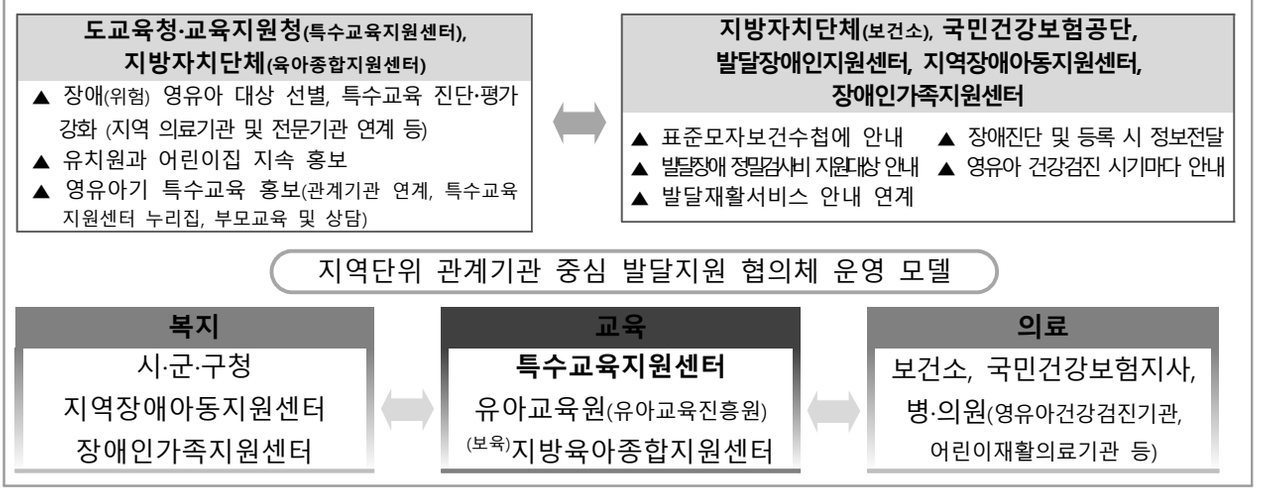
○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 단계까지 맞춤형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안내 및 연계 강화 추진

○ 영유아기 특수교육 홍보 리플릿,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누리집 연계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중심 발달지원 협의체* 운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참고 특수교육 관계기관 정보전달 체계



○ 의료 및 관련기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특수교육 안내 체계 확대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축 및 협업(연 1회 이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연 1회 이상)

○ 관계기관(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장애 의심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 유보통합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강화 및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노력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기중재 안내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특수교육정보자료실(키세넷)과 '온맘' 연계 자녀 양육정보 및 자료 보급

참고 장애자녀 양육정보 연계 누리집



○ 장애(위험)* 자녀 양육 관련 탑재자료 정기적 현행화(연 2회 이상)

*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장애 진단 받을 개연성이 또래보다 높은 영유아

○ 보호자 접근성 편의를 위해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연 4회 이상)

1-1-2.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 장애영아 교육 지원 확대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8.7.) *제6조 2호 단서조항 참고

○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정보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희망 조사 및 실시(연 1회 이상 연수 추진)

참고 장애영아 양육 및 교육지원 관련 자료

-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 6종 ('16.,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용 교사용 지침서('17.,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 연령별 장애영아 교육활동 자료집(0~2세) 12종('19.,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 교육지원 운영 가이드·사례집('24.,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
- 장애영아학급 운영 도움자료 ('24., 충북특수교육원)

○ 영아학급 교육과정 승인 및 담당자 네트워크 운영

○ 장애영유아 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협의회 운영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6. 11.)

❑ 장애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참고 교수·학습지원 자료 안내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탑재 자료 활용
- i-누리-누리과정 포털 사이트(www.i-nuri.go.kr, 육아정책연구소) 나눔누리 자료 활용

○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안내 강화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적 등록·관리 안착 지원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종일반 운영 여건 개선 등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일반학급의 정원 내 편성(국가인권위원회, 2017)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 강화* 및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를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협의체 구성(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애로사항 협의 및 문제해결 모색 등)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현장 지원 자료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18., 국립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22.,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4., 국립특수교육원)
- 통합유치원 운영 안내자료('25., 교육부·울산광역시교육청)

❑ 장애영유아 입학 적응 지원 강화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및 이음교육 지원

- 장애유아 유초 이음교육 안내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현장 지원 현장제안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이음교육 관련 자료

-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17., 경상남도교육청)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집: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 활동 지원자료('22.,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유초(어초) 이음교육 안내 자료('25., 경기도교육청)

○ 입소입학신청사이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면제는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단, 누리과정 3년의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연기자나 취학유예자는 유치원 등에 배치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가능(6세 1년에 한함)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상담, 일반교사-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전환지원 역량 강화(신규-원격연수)

참고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

-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입학적응지원 설명회 개최 등**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보호자 대상 교사 상담 및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 운영

입학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 다만,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서는 이전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 (「2025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3쪽 참고)

※ 유치원 나이스 사용 관련 「유아 나이스 업무안내서」 참고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간 이동 시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전출 및 전입학 처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 유치원 학적 처리 관련 「[부록]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도움자료」 52쪽 참고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생활기록부 점검 지원단 운영

❑ 장애영유아 가족 지원 강화

○ 장애(위험) 자녀 정보 제공 및 양육 자료 안내

○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교육-보육 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담당 교직원*의 특수교육 분야별*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유치원)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 영아기 특수교육 및 가족지원, 장애영유아 유·보·초 연계 이음교육 관련 등

* 교육과정 조정, 행동문제 지원, 의사소통 전략 지원 등

○ 보육기관에 소속된 장애영유아 대상 교육 상담 지원 및 의무교육(무상교육) 홍보·지원(연 1회 이상)

○ 보육기관의 요청 시 장애(위험)영유아 특수교육 진단·평가 실시

○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실태 파악 및 분석(연 1회)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유치원)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 영아기 특수교육 및 가족지원, 장애영유아 유·보·초 연계 이음교육 관련 등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참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강화 시범사업

진단·평가	· 장애 의심 및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치료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시범사업 운영
통학비 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및 보호자 중 원거리 통학자에게 통학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2항

1-2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2-1.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다양화

❑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확대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감축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부지 확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개정 요구

○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노력

○ 특수학교 설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폐교 부지 활용 추진

【(참고)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유형	교육과정별 학급 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8	여주	[공립] 여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8	4	4	2	20
	시흥	[공립] 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 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남양주	[공립] 왕숙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고양	[공립] 고양1특수학교	지적/지체	0	12	9	9	2	32
	포천	[공립] 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2	28
2029	양주	[공립] 양주1특수학교	지적/지체	0	0	15	13	2	30
2030	부천	[공립] 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 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특수학교 다양화 추진**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특수학교 추진 사례】

▲ 안성 모두학교('25. 9. 1.자 개교, 유·초·중)

○ 특수학교의 규모 및 설립 형태에 따른 운영 지원(대규모, 소규모, 병설, 단설, 특성화, 공・사립 등)

○ 직업교육, 예술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운영

○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 특수학교 적정 설립 및 인력 배치 계획 등 추진

❑ **특수학교 지역사회 개방으로 지역사회와 공존**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특수학교 간 교류 활동 확대

○ 운동회, 예술제, 체험학습 등 특수학교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확대

1-2-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교육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운영 다양화**

○ 특수학급 적시·적소 확충을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 조사 및 확보 노력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 추진

○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우선 증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특수학급 지원체계* 개선

* 복합특수학급 운영,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순회학급 운영, 의료적 지원 등

○ 복합특수학급(전일제 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강화

* (2025년) 27교 59학급 → (2026년) 38교 76학급

○ 복합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업무 매뉴얼 보급·활용으로 현장 지원 현장제안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 등 지원 강화

❑ 유치원 과정 지원 강화

○ 연령별 운영 유치원 특수학급의 교사 추가* 배치로 통합교육 강화

* 1학급 4명인 특수학급 중 연령별 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 교사 추가 배치

○ 유치원 과밀특수학급 대상 교사 추가* 배치 운영

* 특수학급 학생 수가 (특수학급 교사 수 × 4명)을 초과하는 경우 교사 1명 추가 배치

1-2-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운영 및 학급당 정원 감축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배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개선 검토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1-3-1.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2026년 3월)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으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고도화 및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업무 총괄 지원

○ 학생별 행동중재 사례 누적 관리 및 생애주기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체계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물리적 환경 개선

○ 치료·방과후, 보조공학기기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 · 분산 등 기능 구조화

1-3-2.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연 1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업무지원 센터(Wee 센터 등)와 협업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른 분야별*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세분화된 지원 확대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및 전문적 교육 체제 지원 강화

* ('23)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개,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1개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증)장애	북부 시각·청각	건강장애
거점지원센터	수원	용인	성남	구리남양주	의정부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재구조화 방안 마련

○ 거점지원센터 전문기관(시각 및 청각장애 복지관, 대학, 연구소 등) 협력 방안 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및 수업 활동 지원 강화

❑ 학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상담 운영 등 가족 지원 강화

○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캠프 운영

○ 특수학교(급) 학부모 자조 모임 지원

○ 지역별, 학교별, 장애 영역별, 주제별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정비 및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현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 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호자 상담 및 학생 면담·관찰 등을 통해 교육적 진단 실시

○ 법령에 규정한 선정·배치 기한 및 서류 등 행정 사항 준수

○ 경기도교육청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기본 사항 이행 철저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영·유·초·중학생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진단·평가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및 협의회 운영(연 2회)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NISE - B·ACT), 적응행동검사(NISE - K·ABS), 정서행동검사(NISE - K·EBS) 등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 실시 방법의 이해,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직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연 4회) 강화 및 처우개선**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이해·결과 해석 및 교육적 활용,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장애영유아 등) 연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지원 등

** 학습휴가제도 운영, 연수 우선 지원,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간 권역별 협의체 조직 및 우수사례 공유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2-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추진목적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 ▲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2-1-1.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

○ 특수학교(급)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지원

-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후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 기반 마련 현장제안

○ 디지털 교육 공간 전환 모델 확산: ('24년) 특수학교 → ('25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교수·학습 모델 고도화 지원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유형】

① 확장현실(XR) 체험 중심	② 미래사회 생활공간 적응 중심
③ 디지털 콘텐츠 활용 중심	④ 지능형 로봇 활용 중심
⑤ 보조공학 활용 중심	⑥ AIoT 기반 행동중재 중심

❑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AI-에듀테크 활용 선도교원 양성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수업지원자료' 탑재자료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SW·AI교육 수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형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지원

* 스마트 패드, 노트북 등 AI교육을 위한 기기 구비, AI스피커 등 AI활용 교육 환경 조성 등

** SW교육 교구(코딩봇, 모듈형 교구 등), AI형 스마트 기기 등

○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프로그램 기기 활용 확대

* AI기반 챗봇, 음성 인식 스피커 등(커뮤니케이션 스킬):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대화 문맥 및 상황인지분석이 가능하여, 일상생활 장면(장소, 대상)별 의사소통 훈련 시 활용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 국립특수교육 누리집(nise.go.kr) > 에듀에이블(eduable.net) > 멀티미디어북, 디지털교육

멀디미디어북	·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 기반 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 SW 코딩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메이커융합 및 AI융합교육 지원 자료
실감형(AR/VR) 교육자료	· 기본 교육과정 교과* 기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 과학, 사회, 일상생활(신체·여가·자립생활) 활동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자료	· 교과 연계, 다양한 업종*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콘텐츠 *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요식업, 교통

○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를 활용·운영하여 특수학급 학생에게 VR·AR, AI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확대 기회 제공

*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

【찾아가는 상상버스 체험 프로그램(예시)】



(실내) AI로봇(클로이)체험



(체험버스) XR모션센서



(실내) 코딩로봇체험



(체험트럭) VR자전거

2-1-2.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강화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비대면(예: 무인정보단말기) 서비스, 온라인 생활서비스(예: 증명서 발급) 활용 등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특수교육공학' 탑재자료 활용

❑ 특수교육 플랫폼 활용 디지털 특수교육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22~)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키세넷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공유

2-1-3.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 참고('23.7.7.,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761)

○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복합특수학급의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복합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학년(군)별 학급 운영 권장

○ 경기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기반 성장 맞춤형 교수학습 모델 운영 안내 및 활용 지원

○ 경기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기반 성장 맞춤형 교수학습 모델 네트워크 구축·운영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및 연구회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굴·보급

❑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9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의료기관* 간 업무협업, 학교와의 용역 계약 체결 안내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병·의원, 종합병원 등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기지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내 의료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흡인(석션),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 등과 같이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등)의 참여와 소견 반영

○ 교내 의료 지원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의료적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참고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참고자료

- 중증소아 돌봄제공자 교육매뉴얼('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21., 인천시교육청)
- 특수학교 학생 건강관리 매뉴얼('22.,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병원)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가이드북('24.,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제도 개선 사항(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2.9.8.), 725('24.2.28.) 참조)】

-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 지원인력의 범위 확대
 - ▸(애로사항)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 시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애로사항) 의료 지원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의계약 적용 검토 가능
-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근거 마련
 - ▸(애로사항) 학교 내 간호사 배치 등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대한 학교와 의료기관의 소극적 참여
 - ▸(제도개선)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신설로 교육감(국립학교는 학교장)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 가능('24.2.27. 공포, '25.2.28. 시행)

❑ 시·청각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원체계 마련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 시각장애(수원), 청각장애(용인), 경기북부지역 시·청각장애(구리남양주)

○ 장애영역별 거점지원센터 중심으로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청능훈련 등 장애특성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 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

○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어언어법」 제11조)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수강에 필요한 기기 우선 지급 등 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건강장애학생 전담교사 지정

○ 건강장애학생 등을 위한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운영 지원 확대

-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병원학교 추가 설치 노력 지속

※【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병원학교 및 스쿨포유 담당자 역량 강화

※【전국병원학교 누리집】 http://hospital.s4u.kr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료 보급 확대*

* '22 경기도 개발「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한 자료」활용

○ 건강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의정부)와 관계기관(국립암센터 등) 연계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담당 교원 연수 활성화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권장(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2-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2-2-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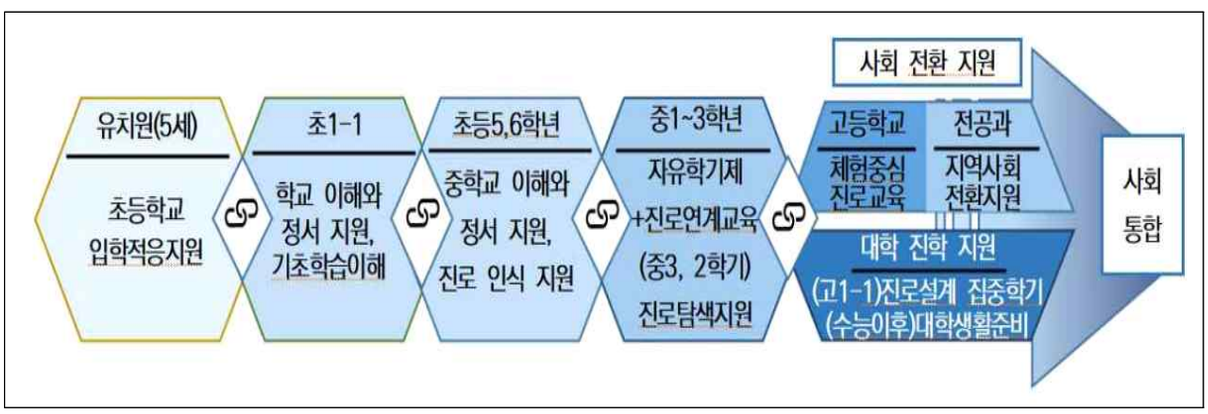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 진로체험망 꿈길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체험처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고, 체험결과(온/오프라인)를 누적 관리하는 등 진로체험활동 체계적 질 관리

○ 지역 내 특화 산업 분야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일회성 체험보다는 교실수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연계교육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내 특화 산업분야 연계 특화 교육과정 등

-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 분	관련 기관 및 현황
지역 거점 진로직업교육 기관 운영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 특수교육지원센터 25청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 거점 및 중점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6교 -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5교
관계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및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진로·취업 지원 확대 및 다양화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연계 전공과 지원자료 개발·보급 현장제안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설명회·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체,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취업 전환 지원

* 권역별 산업체 도제 교육형 현장실습,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 직무 관련 국가 공인·민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사후관리사(휠마스터), 펫푸드스타일리스트, 케이크디자이너, 정리수납 전문가, 바리스타, 컴퓨터(ITQ, 한글, 코딩), 뷰티디자인 등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 도내 대학 연계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연계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다양한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중심의 지역협의체 운영

-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연계활동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구회 활동 권장 및 연수 실시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 보급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콘텐츠,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발간 자료 등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확대

○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협업을 통한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및 유지 도모

- 관계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 및 유망 직종 개발, 훈련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등 협업

【 도내 관계기관 취업 지원 서비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4개 지사)** 지원고용, 일 배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운영, 직업상담 및 평가, 서비스 분류 및 매칭,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개발원-시·군·구 장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등 운영, 취업 전(보호고용, 직업훈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현장 점검 강화

* 각급학교별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자체점검('26.4~12.), 결과 제출('26.12.)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사전교육 콘텐츠 활용 등 학생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용 안내('26.3월)

2-2-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중점 운영교 공모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역 및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도록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기본 이해는 교육부 제작 자료(예: 교육TV 등)를 활용하고,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별도 적용 사항을 중점으로 안내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활용*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1종),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방안(1종),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도움 자료(2종),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1종)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이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등

※【국립특수교육원】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해와 실제(원격)

○ 특수학교의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 2026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구축비' 반영

2-2-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국내외교류 등 운영

* 오케스트라 운영 특수학교('25, 4교),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25, 4청) 문화예술교육 관련 행사, 장애 이해교육 연계 문화예술 행사 등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관련 직종 운영 표준사업장 등 연계 문화예술 행사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연계 취약계층 나눔여행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별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참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사례

- **(음악활동)** 오케스트라(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연합), 합창동아리, 전문가 초빙 기초실기, 초청공연, 공연장 방문, 해외 공연 등
- **(미술활동)** 그림동아리, 작품 전시회, 교내대회 개최, 작가 초빙 전시회, 그림 대여 전시, 전문강사 연계 프로그램,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데이 등

❑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내실화 방안 모색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각 시·군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 체육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학습코칭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 인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체육 인재 발굴 기회를 확대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여 적극 권장, 종목별 거점학교 운영 및 강화 훈련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 가능(「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4. 10. 18.)

* 기준 성적 하향 조정,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반영, 학생 개별 맞춤형 대체 과제 제시 등

○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25. 4개소)등과 연계·협력

* 수원, 광주, 군포, 포천

※ '손에 잡히는 PAPS-D 핸드북' 및 영상 활용(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및 유튜브 탑재)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학교건강검사규칙」제7조 개정(25.3.10.)에 따라, 초4에서 고3 학생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 의무 시행

○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스포츠 컨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남부 거점센터_용인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지원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통합체육 교구나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정책실행연구회 운영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 교원 연수 강화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연계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국립특수교육원】 초·중등학교 일반·특수교사 대상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 및 교실운영 우수교사 해외연수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2-3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목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2-3-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강화 및 작성·관리 체계화

○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학교 구성원이 협력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별화교육 제공

- 특수교사, 일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이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안내 및 운영 사례 활용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육진단 및 평가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 교과 또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예시 등 현장성 강화 자료* 활용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자료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교육부고시 제2023-34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5조제3항)

○ 전 생애 이음 L I F E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경기형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경기형 개별화교육계획 프로젝트】

▲ **전 생애 이음 L I F E 프로젝트** 운영

L (Life) 특수교육대상자의 전 생애에 걸쳐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I (Individualized)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며
F (Family) 가족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E (Environment) 학생이 살아갈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

❑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 제공

- 순회학급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2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의료기관에 설치한 학급(이하 '병원학교') 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순회교육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장애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2-3-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초1~6, 중1~2, 고1~2】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 편성 가능

* 【중3, 고3】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고1~2】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하도록 권장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

* 【고3】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과로 편성 가능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2026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초5~6, 29책) 신규 보급

※ 【중3, 고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활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군 국어, 수학, 사회 교수·학습 자료(서책 6책, 전자저작물 6종)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수학 교수·학습 자료(서책 4책, 전자저작물 4종, 예정) 개발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 활용

* 고등학교 성취수준 개발 자료 1종 보급, 중학교 성취수준 자료 개발('26., 국립특수교육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영역’ 안착 지원

※ 경기형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지원 모델 개발 자료 공유(키세넷)

○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을 위한 핵심 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구성·활용

❑ 특수교육 수석교사 교육과정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 수석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수석교사 (2025년) 3명 → (2026년) 6명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

○ 특수교육 협력강사 500명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학교(급)에서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의 자격

- 특수교육 협력강사 운영교에서 학교장 채용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 실시 등

2-3-3.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동법「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에 따른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 구축 및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황(누적): (’22) 7개 → (’23) 8개 → (’24) 12개 → (’25) 19개 → (’26) 선정 예정

- 계속 지정(12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신규 지정(7개):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시흥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 장애인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 확산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7대 영역* 중 1개 영역에 대한 연차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① 학력보완, ② 기초문해, ③ 직업능력, ④ 인문교양, ⑤ 문화예술, ⑥ 시민참여, ⑦ 성인진로

○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 보급

※ ('25) 중학 수학 1·2단계 → ('26) 중학 수학 3단계, 초등 수학 1·2·3단계 → ('27) 중학 사회, 과학 1·2·3단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25) 기초연구 → ('26) 발달장애 영역 자료 → ('27) 감각장애 등 5개 장애 영역 자료

❑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지역 · 기관별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및 참여율 분석을 위해 「20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본조사 추진

- 기관조사(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면담조사(장애인학습자) 병행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기관설치·운영자, 교·강사 등) 대상 교육·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해·공감 문화 확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는 매년 연말에 수합(예정)

참고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관련 연수

구분	연수 과정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역량 강화 과정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 강화 과정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정
4	공무원 등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과정
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과정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3-1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및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호, 제28조(관련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3-1-1.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 행동중재 특화형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행동중재종합지원팀 운영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행동중재종합지원팀을 통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 환경 구축

○ 행동분석, 행동중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배치

○ 지역 긍정적행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지원 강화

○ 개별사례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생애주기 지원 강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특수학교 간 행동중재 지원체계 마련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행동중재 강화

○ 행동중재 전문가(특수교사) 양성 확대 및 상시 상담, 컨설팅 강화

○ 치유 성장, 가족 지원, 상담 지원 등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차원의 행동중재 운영 사례 공유

○ 행동중재 전문교사 중심 행동중재연구회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운영 사례집 개발·보급

❑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확대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한서중앙병원 1개소 운영)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상호 협력체계 가동 및 성과분석을 통한 집중 지원 모델 확대

○ 한서중앙병원(의정부시 소재)을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

-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집중 치료 및 교육 지원

○ 가정-학교-지역간 중재 일관성, 연속성,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지역 내 전문기관 등

3-1-2.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

❑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 학생 현장지원 및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 (구성) 행동중재 전문가(특수교사), 교수, 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담당 교사, 상담사, 행동중재지원단 지역 위원 등과 연계한 구성을 통해 현장 지원

- (역할) 현장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행동에 대한 기능분석, 개별 행동중재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등

【4단계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단 계	지 원	내 용
1단계	**[가정.학교] 가정, 학교, 학급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 [가정] 학부모 상담을 통한 학생의 긍정적 행동 촉진 - [학교] 행동중재에 대한 교육공동체 이해 및 기초 교육 지원 - [학급] 학급 환경 분석을 통한 행동중재 지원 - 학교-가정-전문가 협력을 통한 보편적 지원 환경 구축
2단계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 지원단 전문가 연계 지원**	- 학생 행동 기능평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원 - 과학적 행동분석-행동기능평가-행동중재 지원 실시 및 평가 - 기초학습기술, 사회성기술, 자기조절기술 등 행동분석에 따른 개별 집중 기술적 지원 - 학부모, 교사 교육 및 컨설팅 연계 지원
3단계	**[행동중재 지원센터] 개별학생 집중지원**	- 학생 개별 행동중재팀 구성 - 학생 개별 행동중재팀의 행동중재 계획 수립 및 집중행동중재 - 정신건강의학적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를 병행한 집중적 중재 지원
4단계	**[종합지원팀] 사례관리 사후모니터링**	- 행동중재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지원 - 경기 행동중재종합지원팀의 개별 학생 이력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속적 지원

○ 특수학교(급)별, 지역별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 학교 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 및 개인, 학교 차원의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지원청: 행동중재 지원과 연계하여 관내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 특수학교별, 지역별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가정-학교-사회에서 행동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 학생별 행동중재 사례 누적 관리 및 생애주기 지원 강화

○ 개별학생 행동평가 · 행동중재 데이터의 누적 집중 관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중재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학생별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로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 경기교육모아 장애학생 행동중재 데이터관리 플랫폼(경기 Be-Able) 운영 고도화

❑ 교육공동체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 특수 및 일반교원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지원

* '장애학생 행동 특성 이해, 학교 및 개별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 사례 및 실습 과정' 등

○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연수

- 외부 양성교육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전문가 양성과정 특별직무연수 운영
- 양성교육 이수 특수교사를 특수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전문가로 활용

○ 행동중재전문가 교사 간 협의체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3-2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 인력 배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과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으로 교육활동 참여 보장**
-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3-2-1. 특수교육 인력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인력 배치 확대 및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족을 위한 정규교사 확보 노력
- 학급 증설이 어려운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추가 배치기준: 유치원(1학급, 5명 이상), 초·중학교(1학급, 7명 이상)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

- 중등과정이 있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지역별 균형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 수석교사 배치
- 읍·면 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규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과 중점 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에 해당 전공 특수교사 전보 및 전보 유예 권장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 전보 및 전보 유예 권장

*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등

- 복합특수학급 및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는 특수교사를 보직교사로 임명 권장
- 일정 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노력
-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확대 배치 노력 및 역량 강화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77명 증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실시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1항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역할 담당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 시 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인력배치 효과성 극대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고려한 배치

▸ 제25조(특정 자격·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별표4] 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 순위: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 (1순위)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

• (2순위)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제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 지원역량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고급)」 등 활용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기존 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직무교육 강화(연 15시간 이상 실시)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설 시 참여 독려

【(참고)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용**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인권교육과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 **(신규요원)** 배치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이 끝난 직후 또는 방학기간 중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과정 수강

○ **(기존요원)** 기존요원 직무교육 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과정 수강

3-2-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

○ 특수교육 치료 · 방과후지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

○ 교내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등 학생 필요에 따라 사용

○ 미사용한 금액은 이월하여 집중 사용 가능(방학중 또는 특정시기)

○ 장애학생의 소질 개발 및 특기적성을 위해 다양한 예체능 및 직업기술 학원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 교육지원청별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정기 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지역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지원 강화

※ 보조기기 수리 · 세척 안내, 교직원 및 장애학생 대상 보조기기 활용교육 등

○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원

❑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별표9],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16, 국립특수교육원)'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 방안 강구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자료('25., 교육부) 참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 【적정 설치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 설치율】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비율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원격),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집합/원격)에 적극 참여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적정·단순 설치율 50% 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조치 결과 관리('26.3., '26.9.)

3-2-3.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26. 초3까지)에 따라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현장지원단 구성 및 방문·점검·컨설팅 지원 등)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강화

※ (초1~2) 희망학생 대상 정규수업 시간 외 매일 2시간 이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방학 및 학기별 운영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 도교육청내에 현장지원단을 구성(2~5명)하여 신학기 전후 집중지원
(필요시, 교육지원청별 구성 및 운영 권장)

** ▲수요조사 현황 ▲공간 및 시설 ▲실무인력 및 지원인력 ▲프로그램(강사 포함) ▲안전관리 ▲홍보·소통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발달 수준과 특성,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외 우수 자원 발굴·연계 지원 확대

참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례

- 초등 저학년의 수준과 흥미, 보호자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요일별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운영
 ※ (월) 튼튼체육교실 (화) 맛나 요리교실 (수) 발달놀이교실 (목) 손말수어교실 (금) 상상미술교실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강사 및 지원인력 등을 확보하고 운영 내실화 도모
 - 대학 연계 강사 및 프로그램 확보, 자원봉사자 활용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인력 지원 등

○ 특수학교 늘봄전담실 설치·운영('25.~)에 따라 담당 인력 대상 실무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으로 방과후·돌봄 내실화 추진

- 단, 사립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적정 직급(위) 행정인력 지원

○ 개인강사 프로그램 심사를 위하여 늘봄허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검증 인력*을 편성·운영

*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로 심사풀 구성 심사풀 내 위원은 3명 이상으로 심사팀 구성 ▲교육청별 '학교예산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당 지급 가능
* [예시] (강사 영역) 자격, 경력, 관련 연수 이수 등 전문성 / 학교와 학생 이해, 수요자 만족도 등 자질
(프로그램 영역) 차시별 주제와 내용 구성, 교수·학습 방식, 교재·교구 활용 적정성 등

❑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확대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확대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지원

※ (사례) △장애에 따른 교육적 특성, 활동 구성 시 유의사항, 통합 활동 지원 컨설팅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합하여 학교적응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은 자체 또는 지역 내 자원을 발굴·보급하여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 노력

- 지역 내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협업하고 각 학교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권장

*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대학, 산림복지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 (예시) △(유·초등) 학교적응, 놀이·체험, (중등) 체육, 문화·예술, 여가, SW 활용, 진로·직업
△(맞춤형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무장애환경 조성, 행동 중재

○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방과후·돌봄 운영 우수사례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도록 지속 노력

❑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 방과후·돌봄 담당인력 및 지원인력 등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원활히 지원하도록 교육(연수) 지원 및 정보 제공 추진

- 담당인력 연수, 워크숍 개최 등 역량 강화 추진, 장애학생 담당 강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비장애학생과 통합참여 시 컨설팅**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특성, 지원 방법(행동중재 등) 등 학생 지원에 필요한 내용
**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활동 구성 시 유의 사항, 통합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등

○ 방과후·돌봄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 체계 구축

- 학생 동선 관리, 개별 맞춤형 귀가 등(예. 대면 인계지점까지 인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예. 학부모 알림서비스, 인터폰·비상벨 설치), 기록물관리 철저*

* 출석부, 학생 관리카드, 위임장, 비상연락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동의서 등

- 강사 대상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및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유지 준수, 행동중재 및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활동 보조,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신변처리, 이동 등)할 때 다양한 유형의 인력* 운영 및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특수교육 예비교사, 학부모 명예교사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관내 학교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를 안내(예. 지원학생의 특성 이해, 지원 내용과 방법 등)하고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 소통

*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지원 대상의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 정보 공유, 학교 및 학급 특성, 장애학생 특성, 자원봉사 관련 전반적 운영 방식, 참여 자세와 태도, 활동 형태, 학급 내 지원인력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등 실질적 지원 방법 전달 등

※ 사전교육은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

❑ 지역사회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 활성화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노력

[참고] 장애학생 교외 방과후활동 및 돌봄 관련 서비스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교육부	방과후 자유수강권	· 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등 분야 외부기관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은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름
	치료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 ※ 지원 금액은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름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대상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일일 최대 9시간까지(월~토요일 09시~21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연간 1,08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연간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대상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 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음악·행동발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재활영역 서비스(바우처) 지원 ※ 9세 미만 아동은 의뢰서 및 소견서가 있을 경우 장애미등록 아동도 이용 가능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추진목적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약자 지원 및 통합교육 강화**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4-1-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정책 수립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약자 지원 강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 ▲ 유·초·중·고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가정 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제도화
- ▲ 정책적 성찰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지속 운영

- SNS, 배너,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를 활용하여 공감 문화 확산 현장제안

○ 유·초·중·고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부서 간 협업 강화

❑ **협력 기반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경기형 통합교육 브랜딩화로 패러다임 변화 유도

참고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 특수학급을 대부분 한 학급씩 설치·운영 ▸ 특수학급 담당 교사 1인 체제 운영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주로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합학급 학생의 교육적 요구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수업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과 역량 증진

4-1-2.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 통합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의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5명 감축(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9.1. 시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안)(2025.2.)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으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참고)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역할】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대학교수,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중재전문가, 보호자, 학교관리자, 치료사, 교육전문직 등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통합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통합교육 탐구수업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일반교육교원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연수 관련 기관(부서)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교(원)장 · 교(원)감 연수)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포함 예정. 단,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보편적 학습설계 및 장애공감 교육활동 등 통합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통합교육 핵심교원 연수 운영

○ 교직원 대상 연수 및 교원 자격연수 시,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교육부-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34조, 제35조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 특수교사의 학교과정별 ·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 기본 소양 및 전문 역량 함양 연수 실시 현장제안

○ 신규교사 배치 시 역량 강화 연수 및 경력교사의 멘토링 지원

○ 특수학교(급) 교원의 불가피한 휴가 사용과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센터 순회교사 지원

○ 특수교육 정책실행 연구회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자율적 특수교육 수업연구회 운영 지원 강화

○ 연구회 성과공유회를 통한 학교 및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활성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전문가 과정 위탁 직무연수 운영

○ 특수학교 관리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예비교사 등 대학생 교육봉사 및 멘토링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을 1:1로 연결하고,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 지원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추진

○ (예비교사) 통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봉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4-1-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 확대 운영 및 인식 개선

○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을 위한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 확대, 교육지원청별 컨설팅 및 협력교사 배치 등 지원 강화

* 학교 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 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 사례 키세넷 탑재

【(참고) 통합교육 협력 관련 자료】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등)」

○ 학교 구성원 간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 ·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조직 · 운영 활성화

❑ 협력적 수업 설계안 개발 · 보급

○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를 통한 협력적 수업 설계안 공유 · 확산

4-2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추진목적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4-2-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내실화**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연 2회 이상)**

- 대상: 모든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제외되는 학교 없이 모든 각급학교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유·초·중·고·특수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계획 반영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연 1회 이상)**

- 근거:「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대상: 유·초·중·고 학생,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
- 방법: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일정 포함하여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대면교육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사업주 및 근로자*)

(*공립학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업주(학교 법인 또는 재단 등)가 연수 실시

- 방법: ① 전문강사 초빙 또는 사내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교육 이수한 자)의 집합연수 또는 체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② 원격교육사이트 활용 (이수증 발급이 되는 사이트 권장)

※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하지 않은 특수교사의 경우 ① 전문강사 초빙, ② 원격교육*을 계획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시스템 활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포함)
- 각급학교 교직원연수 연간계획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일정 포함
-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 **법정의무교육 실시 현황 제출**

1) 장애이해교육(교육부)

- 12월 중 2회 이상 실시 실적을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 2027. 2. 28.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입력 제출*

(*http://www.able-edu.or.kr 입력)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고용노동부)

- 12월 중 실시 실적을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보건복지부)

- 12월 중 실시 실적을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 제19회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사항(「2025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 다양한 방식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장애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장애유형별 이해교육 실시

○ 교육부 주관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활용

※ 특수학급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초·중·고·특수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제4회 전국 장애공감포스터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 인터넷, 방송 및 인쇄물 등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실시

○ 장애인권존중 공감학교 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초·중·고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학교구성원, 지역민 대상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동아리

참고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활동 사례

▲콘텐츠 제작(오디오북, 베리어프리 디자인, 작곡, 영상 제작·공유, 순수창작 도서, 팜플릿·포스터, 카드뉴스) ▲문화예술 연계(독서토론, 독후, 연극, 공연, 영화감상) ▲장애·비장애 통합활동(e-스포츠, 드론 축구대회, 퍼즐동아리, 창작영상 제작, 영화감상, 요리, 바리스타, 카페 운영) ▲법·제도 탐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탐구, 인권교육) ▲캠페인(방송부 연계 공감라디오 on-air, 공모전, 미션 챌린지, 장애인스포츠 체험부스 운영, BF 캠페인, 교내 점자부착) ▲기타(점자 명함 제작, 수어 배우기, 사랑의 편지)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 · 확산

○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육행사 등에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제고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보급 및 활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확대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 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 전문강사 초청, 우수 콘텐츠 활용,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등

** (예) '23년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위리(Wiri)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24년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함께하는 뮤지컬 WITH '위리(Wiri)'

【(참고)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

-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장애공감)
-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활용
-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행사 콘텐츠 등(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뽀꼬 아 뽀꼬' 음악회 등)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 교육자료실 내 인권 자료 활용 등

❑ 미래형 장애이해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 체험존, 직접 체험하는 장애이해교육 지원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적용 무장애 장애이해 체험관* 체험 기회 제공

* 무장애 시설, 제품, 재활 보조공학기기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 교육용 키오스크, 가상현실(VR) 등 확대

❑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을 통한 통합 고도화

○ 학생 및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확대

※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및 활용 방안(연계 프로그램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참고) '학교 장애인식 검사' 기본 구성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일반학교** 초등학생(3~6학년)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활용	1 **장애인식수준 진단**	2 **지표별 수준 확인**	3 **결과 활용**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인식지수 진단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예정	■ (상) ACES ■ (중) MIDD ■ (하) RASE	지표별 인식 수준 결과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적용** ※ 예) '실천' 지수 낮을 경우, '장애·비장애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연계 프로그램: 학교 장애인식 검사 지표별·학교과정별 40개 쇼츠 콘텐츠

○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 권장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50 (마. 교육활동 지원, 2)생활지도 운영)

4-2-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www.nise.go.kr/onmap) 운영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운영)

○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참고)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용)** 2025년 2학기부터 2026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조사표는 3개 영역(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으로 구성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면담조사 포함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

○ 현장지원 (정기지원, 특별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연수와 가·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개별 맞춤 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등)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제출(매월 5일까지) → 시도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25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말)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9조의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 · 성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 · 초 · 중등학교의 관리자 ·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하고, 성교육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진로·인권교육: 인권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 • 학습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규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

* 4. 학교공동체 회복(4-4. 학교폭력 근절 노력)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 참고

○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노력

○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교원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참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고시 및 매뉴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3.9.1. 공포·시행)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24.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개정('25.2.) ▲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25.5.) 참조

○ 특수교육교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생활교육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상담지원, 외부 연수기관, 심리상담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 연계 지원

○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긴급 현장 지원 내실화

【원스톱 (One-stop) 긴급 현장 지원】

정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발행동, 과잉행동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곤란 발생 시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
내용	- 과잉행동, 돌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중재 프로그램 지원 - 사안 발생 시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상담 지원 - 특수학교(급) 교육활동 긴급 지원 전문가 인력풀 조직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시 연락 체계 구축, 절차 간소화 - 치료 등으로 특수교육 교원 결원 발생 시 대체 교사 긴급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조직 및 행동중재 지원 확대

○ 학생 인권 또는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지역자원 활용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교직원,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활용 안내 및 홍보('26.)

○ 특수교육교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예방 지원* 권장

* 보호장구(안전장갑, 안전화, 보호대, 긴급호출벨 등) 구입비 학교 예산 편성

V. 부 록

부록1 2026 연간 특수교육 주요업무 추진 계획

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1月	· 2026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교 선정 ·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 · 2026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계획 · 2026 특수교육 순회교육 운영 지침 · 2026 통합교육 지원 계획(정다운학교,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등)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알림 · 2026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 알림 · 2025 3차 특수교육 방과후교육비 신청(2026년 1월~2026년 2월) ·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2月	· 2026.3.1.자 사립 특수학교 편성 및 학생, 교원 현황 자료 제출 · 2026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계획 알림 · 특수교육지도사 배정 및 채용 결과 보고, 소요예산 신청 · 2026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알림 및 위탁교육 신청 · 2026 치료·방과후지원 운영 계획 · 202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행동중재 지원 운영 계획 알림 · 2026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계획 · 2026 특수교육 교육과정 승인(순회학급, 영아, 전공과)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운영 계획 알림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계획 알림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계획 알림 · 2026 대학연계봉사활동 운영 계획 알림 · 2026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 202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3月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 2026 상반기 특수교육 담당자 워크숍 · 2026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 장애인의 날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1차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비 신청(3월~8월) · 2026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알림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알림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행동중재 지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2026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구성 ·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 계획 안내 및 종목별 선발전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안내 · 보조공학기기 신규 물품 구매 선정 및 예산 재배정

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4月	· 2026 특수교육통계조사 실시 · 2026년 특수교육 실태조사(Ⅶ) 실시(4월~9월) · 2026년 특수교육 종단조사 실시(4월~9월) · 2026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및 저소득층 특수학교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알림 · 2026학년도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교 모집 공모(1차) · 2026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네트워크 1차 협의회 운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26 경기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프로그램 안내
5月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1차) 및 저소득층 특수학교 주제별 체험학습비 교부 ·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원격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 2027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안내 및 연수 · 2026학년도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교 모집
6月	· 2026 경기도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화대회 및 e페스티벌 · 202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 실시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설명회
7月	· 2026 상반기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컨설팅 · 2027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서류 접수
8月	·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연수 및 힐링프로그램 · 2026 하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9月	· 2026 하반기 특수교육 담당자 워크숍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2차) 신청 · 2차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비 신청(9월~2026년 2월)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박람회 ·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각급기관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알림 · 보조공학기기 신규 물품 구매 선정 및 예산 재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성과 평가(1차)
10月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2차) 교부 · 2027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알림 · 2026 특수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네트워크 2차 협의회 운영 ·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11月	· 2027학년도 전공과 입학전형 · 2027 진로전담교사 선발 계획 알림 ·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만족도 조사 및 수요 조사
12月	·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교육 실시 현황 조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치료·방과후지원 운영 만족도 조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성과 평가(2차) · 2026 하반기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컨설팅 · 2026 특수교육활동 유공 교원 표창

부록2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설립	유형	주소	전화번호
1	남양주	경은	공립	지적장애	남양주시 송산로 679번길 6	575-0062
2	이천	다원	공립	지적장애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 46번길21	645-6602
3	부천	부천상록	공립	지적·지체장애	부천시 길주로 574	032)678-2810
4	김포	새솔	공립	지적장애	김포시 김포한강3로 315	986-9648
5	성남	성남혜은	공립	지적장애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18번길 8	734-5022
6	성남	성은	공립	지적장애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66	706-6983
7	의정부	송민	공립	지적장애	의정부시 민락로 262	852-7811
8	수원	아름	공립	시각·지적장애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32	070)4423-9702
9	안양	안양해솔	공립	지적장애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길 61	471-5824
10	파주	자운	공립	지적·지체장애	파주시 교하로 220	935-8120
11	화성	화성나래	공립	지적장애	화성시 동탄대로10길 17-12	8055-7630
12	양주	양주도담	공립	지적·지체장애	양주시 옥정서로5길 121	839-6200
13	용인	용인다움	공립	지적·지체장애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728-1598
14	의왕	의왕정음	공립	지적·지체장애	의왕시 포일동 28번지	426-0020
15	안성	모두	공립	지적·지체장애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1001	8057-9173
16	평택	동방	사립	지적장애	평택시 소사1길 33	652-1271
17	광주	동현	사립	지적장애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55	764-0982
18	고양	명현	사립	지적장애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38	02)381-6587
19	안산	명혜	사립	지적장애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65	406-1148
20	고양	밝은	사립	지적장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7번길 104-9	911-7060
21	부천	부천혜림	사립	지적장애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26	032)666-7994
22	광주	광주새롬	사립	지체장애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799-3902
23	파주	새얼	사립	지적장애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33번길 69-1	958-7004
24	하남	성광	사립	지적장애	하남시 신장로 55번길 71	796-3103
25	오산	성심	사립	지적장애	오산시 독산성로 140-24	374-4694
26	수원	수원서광	사립	지적장애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517번지	256-8005(202)
27	평택	에바다	사립	청각·언어장애	평택시 진위면 하북4길 129-23	611-9342
28	용인	용인강남	사립	지적장애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40번길 1-7	899-2114
29	광주	인덕	사립	지적장애	광주시 사기막길95번길 59	763-6183
30	수원	자혜	사립	지적장애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47	292-2579
31	양평	창인	사립	지적장애	양평군 단월면 백동길 92	774-7905
32	안성	한길	사립	지적장애	안성시 고삼면 행복길 25	070)8667-0880
33	광주	한사랑	사립	지체장애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2	798-1895
34	화성	한우리	사립	청각·언어장애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 243	352-3090
35	화성	해원	사립	지적장애	화성시 장안면 은골길 30번길 43	351-0806
36	고양	홀트	사립	지적장애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	915-2912
37	의정부	희망	사립	발달장애	의정부시 진동로 11번길 9-2	829-8511
38	고양	한국경진	국립	정서장애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41	900-1504
39	안산	한국선진	국립	지적장애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409-1224

부록3 경기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순	교육지원청	설치장소	대표전화	주 소
1	수원	원천중	031-211-6401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2	성남	검단초	031-788-9111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25
3	안양과천	덕천초	031-443-6945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7
4	부천	부광초	070-7096-7470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 40
5	광명	충현초	02-2615-9647	광명시 성채안로 16
6	안산	교육지원청	031-8085-3930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7	평택	군문초	031-618-0682	평택시 원평로 21
8	군포의왕	당정초	031-455-5034	군포시 고산로 151번길 26-24
9	여주	교육지원청	031-880-2360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1층)
10	화성오산	성산초	031-377-4329	오산시 성호대로 43
11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031-280-7250	광주시 광주대로 178
12	양평	교육지원청	031-770-5620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13	이천	교육지원청	031-645-1670	이천시 이섭대천로1311번길 18
14	용인	지석초	031-334-7552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5
15	안성	경기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	031-8056-5400	안성시 백성2길 59
16	김포	교육지원청	031-980-1280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운양동
17	시흥	소래초	070-7097-1690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14
18	의정부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031-847-4685	의정부시 고산로 121 (학교지원센터)
19	동두천양주	덕계초	031-864-0255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29
20	고양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031-929-8700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8
21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031-550-6180	1센터: 남양주시 경춘로 520
		양오중	070-4345-7348	2센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61-31
22	파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031-869-8450	파주시 교하로 1290번길 38(학교지원센터)
23	연천	교육지원청	031-839-0136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56-1
24	포천	교육지원청	031-539-0130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25	가평	교육지원청	031-580-5124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17

부록4 경기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순	설치장소	연락처	주소	지역
1	경은학교	070-4344-1133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79번길 6	구리남양주, 가평, 양평
2	다원학교	031-645-6691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 46번길 21	광주하남, 이천, 여주, 용인
3	부천상록학교	070-4099-5390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574	부천, 시흥, 광명, 안산
4	송민학교	070-4364-4988	의정부시 민락로 262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포천
5	아름학교	031-270-5542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 평택, 화성오산, 안성
6	의왕정음학교	070-8886-4657	의왕시 벌모루길 74	군포의왕, 안양과천, 성남
7	홀트학교	031-915-0262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	고양, 파주, 김포

부록5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현황

순	설치장소	연락처	주소	지역
1	경기발달장애인 훈련센터-남부	220-7720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18 KB 손해보험 1층	경기 남부
2	경기발달장애인 훈련센터-북부	879-7505	의정부시 시민로62, 삼성생명빌딩 7층	경기 북부

2026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

발 행 일 2026년 1월
발 행 처 경기도교육청